posco
포스코퓨처엠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Stakeholder Engagement Policy)

최종 수정일	'25. 12. 01.	최초 제정일	'23. 04. 28
Rev.	2	표준번호	-
담당부서	지속가능경영그룹		
검토자	지속가능경영그룹장		
승인자	대표이사 사장		

목적

포스코퓨처엠은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본 정책은 ISO 14001, ISO 45001, RBA Standard 등 국제 표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공정·투명·안전하게 수렴 및 소통하고, 그 결과를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과와 책임경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 전 사업장 및 출자법인에 적용된다. 포스코퓨처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 현장 서비스 제공업체, 공급업체, 고객, 방문객, 인근 지역사회 등 당사 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원칙

1. 이해관계자의 정의

-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활동, 제품, 서비스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에는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공급사, 지역사회, 정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 그룹	정의
고객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해관계자로 당사의 경제 및 기업가치 창출의 근원
임직원	비즈니스 활동 및 성과창출의 주체로서 내부 이해관계자인 동시에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당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주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복귀한 근로자 포함)
주주 및 투자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무자본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로서, 당사의 경영과 수익성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공급사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료나 자재를 공급하는 이해관계자로서, 당사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 (현장 서비스 제공업체 포함)
지역사회	화학, 이차전지소재 산업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기업운영에 관한 규제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당사의 영향력과 책임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이해관계자 (사업장 인근 주민 및 방문객 포함)
정부 및 시민단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로 당사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는 일반적인 기능, 규모 및 중요도, 기업활동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자가 받는 영향도 및 연관성, 해당 이해관계자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및 관련성 등에 따라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 진실, 공정,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 받는 기업상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불변의 가치로 인식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이해관계자와 주기적 소통을 통해 기업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사회책임경영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소통 채널 : 정기 간담회, 홈페이지, 안전·환경 전용 제보 채널, 방문객 안내실 등
(환경, 안전, 노동, 윤리, 공급망 관련 불만사항은 익명·비밀리에 제보 가능하며, 신고자는 불이익·보복을 받지 않는다.)

- 소통 대상 :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공급사, 지역사회 및 인근 주민, 정부 및 시민단체, 방문객 등

- 소통 절차

① 식별 : 영향력 및 이해 수준에 따라 이해관계자 그룹 분류
② 참여 : 그룹별 소통 채널 운영 (회의, 교육, 안내, 의견수렴 등)
③ 기록 : 모든 소통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
④ 피드백 :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개선조치 결과를 재공유
⑤ 검증 :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설문·인터뷰·성과지표(KPI)로 평가

- 소통 효과성 검증

① 정량적 KPI 관리 (참여율, 응답률, 피드백 반영률, 개선조치 실행률 등)
②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및 VOC 분석
③ 개선활동의 결과를 경영층에 보고 및 재검증

3. 지역사회 존중 및 참여

-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69호 또는 유엔 선주민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선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선주민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실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지역사회 발전

-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실행방안

1.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 거버넌스

- 이해관계자 참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 설정 및 소통 절차, 이행 모니터링은 이해관계자 특성에 맞는 유관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각 전담 부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및 리스크 점검절차 운영, 이해관계자 대응 활동의 이행, 기관 협력, 관련 VOC 접수 채널 운영 등을 수행한다.
-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중요 이슈 발생 시에는 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다.
-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및 성과 정보를 공시한다.

2. 이해관계자의 식별, 참여 및 소통 절차 마련

-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식별하고, 그 영향의 수준을 파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여기에 의사소통 채널의 운영 주체와 주기 및 방식이 포함되도록 한다.

3. 지역사회 보호 및 참여 절차 마련

-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 사업수행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이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기업활동이 지역 주민의 재정착 및 보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 기업활동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와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의 하에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홈페이지, 전화 등의 소통 채널은 상시 개방하여 운영한다.

4.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

-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사회공헌 활동 지침'에 따라 추진한다.

5. 고충처리제도

- 기업활동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윤리상담센터(Helpline), 비윤리 신고센터(Hotline) 등의 기존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고충 접수 범위

  ① 안전 : 산업안전, 작업환경, 사고 및 재해 위험, PPE 미비, 비상대응 등
  ② 환경 :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자원 사용, 오존층 파괴, 지역 환경 영향 등
  ③ 노동 : 근로조건, 임금체불, 과도한 근로시간, 차별, 성희롱, 괴롭힘, 아동·강제노동 등
  ④ 윤리 : 부패, 뇌물, 이해상충, 정보보호, 인권침해, 윤리적 경영 미준수 등
  ⑤ 공급망 : 원자재 조달, 하청업체 근로조건, 물류 안전, 협력사 ESG 리스크 등